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151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중앙회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B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강원 양양군 D 답 463m²'에 관하여 2023. 6.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23. 6. 30. 접수
제50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F'이라는 상호로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2017. 7.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 8,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위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은 계속적으로 갹신되었다.

나. 피고는 'H'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C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서 상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C의 요청으로 2023. 1. 2.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23. 6. 30.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등에 대한 담보조로 자기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23. 9.경 위 가.항 기재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그 무렵 G은행에 83,572,638원(원금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23. 9.경 성립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보다 오래 전인 2017. 7.경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3. 9.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에 원·피고 외에도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이 다수의 일반채권자들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편파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로 경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장현

1) E 관리기관